

三國時代 刑律과 社會

鄭 璟 喜*

目 次	
I. 머릿말	IV. ‘王者天孫說’을 脫皮한 社會
II. 三國時代의 刑律	V. 맺는 말
III. 刑律의 基盤으로서의 政治 와 社會構造	

I. 머릿말

이 글은 삼국시대 刑律을 통해 삼국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해보자는 데에 작업의 목표가 있다.

문헌자료가 지극히 한정돼 있는 삼국시대의 이해를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게 政治史 연구에 집중돼 왔다. 이러한 상황은 法제도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田鳳德이 신라의 律令에 관한 연구¹⁾를 발표한 이래, 몇편의 律令 연구에서도 官制나 신분제도에 주된 관심이 주어져 왔다. 필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 刑律을 당시 社會史的 발전을 이해하는 단서로 파악하고자 한다.

삼국시대 刑律에 관한 자료는 중국의 史籍 가운데 高句麗傳과 百濟傳에 단편적이긴 하나 비교적 정리된 형태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援用한다면 사회발전단계론적 이해에 새로운 단

*한국일보 論說委員

1) 田鳳德, 1956, 〈新羅의 律令攷〉《서울大論文集 人文社會科學》4輯, pp. 311~358.

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사회사적 이해는 보다 전통적인 三國時代史 이해의 테두리에 비추어 검증해 보기로 한다. 刑律을 통해 얻어진 사회사적 이해와 보다 큰 삼국시대사 이해의 틀을 재검토해 보자는 두 가지 문제의식으로 이 글이 구성될 것이다.

원래 이 글에 담긴 인식의 틀은 필자가 그동안 발표해온 일련의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것임을 밝혀 둔다. 특히 백제와 고구려의 刑律분석은 法史學界에 필자가 던지는 質問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시대사 이해가 進一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學問間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 재구성한 것이다.

II. 三國時代의 刑律

三國의 律令頒布

成文法인 律令의 頒布는 三國발전과정에 나타나는 주요한 指標的史實로 주목돼 왔다. 이러한 指標的史實로는 律令頒布와 함께 불교公認, 太學설립, 國史修撰 등 네 가지가 꼽힌다. 이들 일련의 제도적 整備는 三國 모두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 가운데 律令頒布의 경우 고구려는 小獸林王 3년인 A.D.373년, 신라는 1백 47년 뒤 法興王 7년인 A.D.520년으로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다. 백제의 律令에 관해서는 頒布연대가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推定해 볼 수 있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古爾王代의 사실로 《삼국사기》에 전하는 官制정비다. 《삼국사기》의 유명한 이 기사는 古爾王 27년(260년)에 6佐平의 관직과 16等の 官等·服色이 제정됐다고 했다. 종래 별다른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 2년뒤인 29년에는 瀆職 官員에 대한 刑律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古爾王 27년

에서 29년까지에 보이는 기사들은 律과 令에 걸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古爾王代의 이 기사에 관해서는 문헌사학계에서 泗泚시대 사실을 遡及·附會한 것이라는 不信論도 있어 論点이 되고 있다.³⁾

필자로서는 《삼국사기》 古爾王代의 官制정비 기사를 아무리 유보적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古爾王 27년인 260년에서부터 적극적 정복활동이 벌어지는 近肖古王의 治世가 시작되기 전 346년(契王 3년)까지 사이에 율령반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⁴⁾ 가장 늦게 잡아 契王 3년(346년)으로 쳐도 고구려보다 27년 앞서고, 신라보다는 1백74년 앞서는 연대가 된다.

어쨌든 삼국 모두 律令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분명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중국의 문헌에 고구려와 백제의 刑律에 관한 짧은 하지만 잘 정리된 기사가 남겨져 있다. 더구나 이들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있다.

고구려와 백제의 刑律

백제의 刑律에 관해서는 《周書》와 《北史》, 그리고 《新·舊唐書》의 百濟傳에 기사가 보인다. 고구려의 刑律에 관해서는 이보다 앞서는 《三國志》 및 《後漢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刑律을 비교하기 위해 두 왕국 모두 《周書》와 《北史》, 그리고 《新·舊唐書》의 기사를 보기로 한다. 두 나라

2) 오늘의 법률개념으로 분명히 표현 할 수는 없지만 律은 형법체계, 令은 비형법체계 또는 행정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島田正郎, 1970, 《東洋法史》(明好社, 東京), pp.44~47.

3) 고이왕대 官制정비 기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李鍾旭(1978, 〈百濟王國의 成長〉); 1978, 〈百濟의 佐平〉), 懷疑的 또는 소급 부회로 보는 입장은 李丙燾(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勢力의 變動), 金哲俊(1973, 〈百濟社會와 古文化〉), 盧泰敦(1975,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研究〉), 盧重國(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1981, 〈泗泚時代 百濟 支配體制的 變遷〉), 李基東(1987, 〈馬韓領域에서의 百濟의 成長〉)등.

4) 鄭璟喜, 1988, 〈三國時代 문화의 사회적 배경〉《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一志社), pp.172~176.

모두 《周書》와 《北史》의 기사가 같고, 《新·舊唐書》가 같은 내용이다. 먼저 백제의 刑律에 관해 보기로 한다.

“반역했거나⁵⁾ 군인으로 도망한 자 및 살인자는 斬한다. 도둑은 귀양보내고(流) 훔친 물건은 2배를 徵하고, 犯姦한 婦人은 남편 집의 婢로 삼는다”(이상 《周書》·《北史》). “반역자는 죽이고(死 또는 誅), 그 집은 籍沒한다. 살인자는 奴婢 셋으로 속죄한다”(이상 《新·舊唐書》).

한편 고구려의 刑律에 관해서는

“반역자는 (기둥에 묶어=北史) 먼저 불로 (몸뚱이를=필자) 지진 다음 목을 치고 그집을 籍沒한다. 도둑은 훔친 물건의 10여배(10배=北史)로 보상케 하고, 가난해서 보상할 수 없거나 公私債를 진 자는 그 자녀를 奴婢로 삼아 갚게 한다”(이상 《周書》·《北史》). 《新·舊唐書》에는 반역자를 불로 지진 다음 목을 치고, 도둑은 10배(12배=舊唐書)로 갚게 한다는 것 외에 새로운 내용이 보인다. “城을 지키다 항복하거나, 戰陣에서 敗하거나, 살인하거나 劫탈한 자는 목베다. 牛馬를 죽인자는 沒身해서 奴婢로 삼는다.”

백제와 고구려의 刑律은 이상의 기사로 볼 때 상당한 隔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구려의 刑律이 상당히 가혹하다. 첫째 반역자의 경우 백제에서는 단순히 죽인다고 해서 斬(《周書》·《北史》), 死(《舊唐書》), 誅(《新唐書》)한다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는 목을 치기 전에 불로 지지는 附加的인 형벌이 있었다. 먼저 불로 지진다(《周書》), 기둥에 묶고 불로 지진다(《北史》), 무리를 모아 햇불을 들고 다투어 불로 지저 몸이 그슬리고 데어서 살갓이 익고 벗겨진 다음 목친다(《舊唐書》)라고 한 것으로 봐 附加的인 형벌이 상당히 가혹한 것이었다. 둘째로 도둑에 대해서도 백제에서는 귀양보내고 훔친 물건은 2배

5) 이들 百濟傳 또는 高句麗傳에는 反·叛·逆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本稿에서는 편의상 ‘반역’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反·叛·逆의 구분에 관해서는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關한 一試論〉《東方學志》21輯, pp.129~130참조.

로 갇는 데 비해, 고구려에서는 10여배(《北史》·《周書》)는 10배, 《舊唐書》는 12배로 갇는다 했다. 따라서 갇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자녀를 노비로 삼는다는 기사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백제에서처럼 도둑을 귀양보낸다(流)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그것이 촌락같은 생활권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을 뜻한다면 고구려에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백제에서는 살인자도 노비 셋으로贖한다(《新·舊唐書》) 했으나, 고구려에서는 斬한다 했다. 더구나 소나 말을 죽여도 노비로 삼는다 했다. 그래서 《北史》와 《新·舊唐書》는 모두 고구려에서 “用法이 嚴峻해서 법을 어기는 자가 드물다”고 했다. 《新·舊唐書》는 또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는다”고 까지 했다.

이처럼 가혹한 고구려의 用法 내지 用刑制度에 대해 《梁書》나 《南史》에는 또 다른 기사가 보인다. 고구려에는 “牢獄이 없고, 죄 지은 자가 있으면 諸加會議에서 評議에서(重罪者는=南史) 죽이고, 그 妻子는 沒收한다”는 것이다. ‘獄’이란 오늘날의 刑務所 같은 시설이 아니라 未決囚의 拘置場所를 뜻한다⁶⁾ 따라서 獄이 없다는 것은 모든 犯法이 상당한 재판절차 없이 일종의 즉결처분으로 처리됐음을 뜻한다.⁷⁾

이러한 刑律과 관련된 일련의 현상들이 어떠한 사회사적 배경 밑에 형성됐는가를 직접 밝힐만한 문헌자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사회사적 배경과 관련시켜 생각하기 위해서는 世界史的 자료와 중국의 자료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발전단계가 낮을수록 형벌이 가혹했다는 점이다.

뒤르켐(Durkheim)은 범법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에 따라 法을, ‘억압적인 법’과, ‘原狀恢復

-
- 6) 根本 誠, 1939, 《上代支那法制的 研究 刑事篇》(東京, 有斐閣), pp.490~527.
 滋賀秀三, 1972, 〈刑罰의 歷史—東洋〉《刑罰의 理論과 現實》(莊子邦雄等編, 東京, 岩波書店), p.94.
- 7) 고구려에서 王의 特赦令이 빈번했던 것으로 봐 牢獄이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丘秉朔, 1984, 《韓國古代法史》(高麗大學校出版部), pp.70~71.

的인' 법의 두가지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직된 억압적 제재가 刑法을 구성한다. 형벌은 발전단계가 낮은 사회일수록 감정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 원시인들은 형벌 자체를 위해서 벌한다. 흔히 벌은 죄인의 한계를 넘어 죄없는 妻子나 이웃에까지 미친다. 또 범죄 행위에 비해 훨씬 엄하다. 死刑에 대해 附加的인 고통을 주는 방법이 발전하게 된다. 古代 로마에서는 도둑이 훔친 물건을 되돌려줄 뿐 아니라 2배 내지 4배로 賠償케 했다. 발전단계가 낮은 사회에서 法을 집행하는 것은 民會였다. 게르만족이 그런 예에 속한다. 古代 로마에서도 民事문제는 執政官에게 넘겨졌지만 刑事문제는 民會에서 다루었다. 또 흔히 특권계급이나 特定の 長官들이 法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원시사회에서는 法이라면 형벌에 관한 法이 전부였다. 그러나 사회적 分業이 발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적인 法이 발전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형벌의 대상은 줄어들고, 強度도 약해진다. 예를 들어 古代그리스나 로마에서 죽음으로 다스리던 不孝罪나 종교적 罪는 刑法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계적으로 국가에 대한 반역은 罪주지않는 사회가 없지만, 그에 대한 보복적 감정 따라서 형벌은 약화돼 왔다.⁸⁾

이러한 世界史的 흐름은 삼국시대 이땅의 律令제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는 中國⁹⁾에서도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앞서 나타났다.

중국의 周代, 대체로 춘추전국시대 문헌에 나오는 五刑은 死刑인 大辟과 네가지 肉刑을

8) Durkheim, Emile, 1911, *The Division of Labour in Society* (Translated by Simpson, George, 1933; The Free Press, Macmillan Co., New York, 1964), p.69, pp.76~79, pp.85~86, pp.152~167.

9) 《삼국사기》法興王 7년(520년)條에 나타난 신라 최초의 律令은 小獸林王 3년(373년)에 반포된 고구려 律令을 이어받은 것이고, 고구려 律令의 母法은 晉의 泰始律令일 것으로 田鳳德에 의해 추측된 바 있다. 盧重國은 이 推論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 律令의 復元을 試圖하고 있다.

田鳳德, 1956, 앞글, pp.311~314.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東方學志》21輯, pp.91~92.

백제의 律令에 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으나 중국 律令의 영향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뜻한다. 肉刑 네가지는 ① 얼굴에 文身하는 墨, ② 코를 자르는 劓, ③ 다리를 자르는 剕 (또는 刖), ④ 去勢하는 宮이다. 이밖에 귀를 자르는 劓刑도 있었다. 그러나 관료제적 領域 국가가 나타나면서 罪의 輕重을 다양하게 가감할 수 있고, 치명적이 아닌 刑罰이 발달되고 刑罰의 成文化가 이루어 진다. 여기에서 強制勞役刑이 생기게 됐다. 중국의 법제사상 전환점이었던 漢代에는 文帝 13년(B.C.167년) 가혹한 肉刑이 폐지됐다. 동시에 전국시대 이래 발전돼온 勞役刑이 정착하게 됐다. 이것을 徒라고 했다. 또 公職추방을 뜻하는 禁錮도 나타났다. 5세기 이후 北魏代에는 自由刑의 일종인 流刑이 律體系에 편입되고, 唐代에 와서 笞杖徒流死의 五刑이 확립됐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원시적인 報復刑에서 自由刑 내지 教育刑主義로의 발전을 示喚한다.¹⁰⁾

이러한 중국의 法制 내지 法制사상은 周邊民族에 대해서도 비슷한 발전방향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刑法체계에서 중국과의 교섭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蒙古를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시적인 復讐主義에서 賠償主義로, 이어서 實刑主義로 옮겨 간다. 이러한 과정은 베트남에서도 인정된다.¹¹⁾

10) 《書經》의 虞書 大禹謨篇에 보이는 “...刑期于無刑 民協于中(형벌을 씌어 형벌이 없어지도록 하여, 백성을 中正의 길에 맞도록 함)”이라는 文句가 孟子에 이르기까지 儒家의 教化를 위한 目的刑主義 또는 寬刑主義를 나타낸 글귀로 흔히 인용돼 왔다. 《書經》의 虞書 舜典에는 “귀양살이로 五刑을 너그러이 했다”고 해서 “流宥五刑”이라는 글귀가 있다.

根本 誠, 1939, 앞책, pp.150~185, pp.301~333.

仁井田 陞, 1959. 《中國法制史研究 刑法》(東京大學 出版會), pp.57~59, pp.65~69, pp.72~77, pp.83~93, pp.97~106, pp.109~110, pp.132~142.

島田正郎, 1970, 《東洋法史》(東京, 明好社), pp.44~48.

滋賀秀三, 1972, 앞글, pp.94~101.

11) 仁井田 陞, 1959, 앞책, pp.363~366.

島田正郎, 1970, 앞책, pp.213~214.

實刑主義란 정치권력의 成長과 함께 私的인 制裁權이 公的인 권력에 집중돼 가는 과정에서 생긴다. 이에 따라 贖刑制가 實刑制로 옮겨 가는 것은 중국을 비롯한 세계각지에서도 인정된다.

仁井田 陞, 1959, 앞책, pp.308~311, pp.360~372.

이상의 자료들을 염두에 두면서 백제와 고구려의 刑律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을 다시 보기로 한다. 먼저 주목할것은 고구려의 用刑이 백제에 비해 원시적인 報復主義의 색채가 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제에서는 寬刑主義의 색채가 짙다. 같은 반역자의 경우에도 고구려에서는 斬하기 전에 焚刑을 附加하고 있다. 도둑에 대해 고구려에서 '10여배'로 償케 했다는 것은 北方諸民族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夫餘의 12배(《後漢書》 夫餘傳), 突厥의 10여배(《周書》·《北史》), 女眞 10배(《北風揚沙錄》)등과 같은 전통이다.¹²⁾ 그러나 백제에서는 '流와 兩倍徵'(《周書》·《北史》), '3倍 追贓'(《舊唐書》) 또는 '3倍償'(《新唐書》)이라 했다. 이것은 唐律에서 實刑과 함께 '倍贓'이라 해서 倍額을 徵한다는 것과 비슷하다.¹³⁾ 10여배로 갚지 못하면 자녀를 노비로 삼기까지 하는 고구려와는 판이한 상황이 었다. 그러나 백제에서 살인을 '奴婢三'으로 贖한다는 것은 北方民族의 색채가 짙다.

삼국시대 刑律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사실은 백제에 流刑이 있었고, 또한 瀆職官僚에 대한 名譽刑으로서의 禁錮가 있었다(《新·舊唐書》 및 《삼국사기》古爾王 29년條)는 것이다. 백제의 流刑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도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義慈王에게 護國의 計策을 올린 忠臣 興首가 "得罪해서 古馬彌知縣에 귀양(流竄)가 있었다"(義慈王 20년條)는 것이다.¹⁴⁾ 이것은 삼국시대 史錄에 보이는 유일한 流刑의 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¹⁵⁾ 또한 고구려에 牢獄이 없다(《三國

12) 仁井田 陞, 1959, 앞책, p.307, pp.351~356.

島田正郎, 1970, 앞책, p.218.

13) 仁井田 陞, 1959, 앞책, p.308.

島田正郎, 1970, 앞책, p.218.

14) 《삼국사기》地理志 百濟條에는 武珍州管下에 古馬彌知縣이 보인다. 《東國輿地勝覽》卷37 長興都護府의 古跡條에는 長興管内 遂寧廢縣이 "본래 백제때 古馬彌知縣"이었다고 했다.

15) 고구려에서 新大王이 즉위한 뒤(2년, 166년) 次大王의 太子가 "죽음을 내리지 않고 放之遠方"해 달라고 救命을 청했다는 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를 讓國君에 봉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流刑을 시행했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志》·《南史》·《梁書》)는 것과는 달리, 삼국시대 말기이긴 하지만 백제에서 義慈王代 충신 成忠은 獄中에서 護國의 計策을 올리고 죽었다(《삼국사기》 義慈王 16년條). 상당한 재판절차가 있었음을 示唆한다고 볼 수 있다.

Ⅲ. 刑律의 基盤으로서의 政治와 社會構造

그렇다면 이러한 고구려의 酷刑主義와 백제의 寬刑主義의 엄청난 隔差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역시 이러한 의문에 직접적인 解明의 실마리가 될만한 문헌의 자료는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두 왕국의 사회구조적인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백제·고구려가 다 같이 유교문화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刑律制度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면, 역시 사회구조적인 차이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백제의 官僚조직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백제가 상당한 규모의 官僚群을 거느린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삼국사기》의 古爾王代 官制整備기사에는 문헌사학계에서 遡及附會로 보는 懷疑論이 있다. 그것을 後代의 遡及附會로 본다하더라도, 필자로서는 적어도 腆支王 3년인 407년까지는 ‘佐平’ 제도가 완성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古爾王 27년(260년)의 官制整備 기사대로 ‘6佐平’이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¹⁶⁾ 설혹 이러한 추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周書》와 《北史》시대 백제에는 內外官 22部(《北史》는 21部)가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北史》와 《隋書》를 종합해 보면 內官 12部, 外官 10部の ‘長吏’는 임기가 3년이었다. 적어도 泗泚시대 백제왕국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精緻하게 조직된 判僚群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6佐平

16) 앞의 註(4)참조.

과 22官府의 관계는 확실치 않다. 아마도 佐平制가 귀족층과 관련되고, 22官府가 절대 왕권의 발전과 관련될 것이라는 정도의 원칙적인 推論은 가능할지 모른다.¹⁷⁾ 어쨌든 《隋書》가 백제사람들은 “吏事に能하다”고 特記한 것을 보더라도 백제의 관료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吏事’란 국가행정업무를 가리킨 말일 것이다. 결국 백제의 관료제적 지배체제 전통은 漢城시대 이래 두드러졌고, 熊津시대 이후 泗泚시대에는 대규모의 관료群을 거느리게 됐던 것이다.

백제의 관료조직과 관료群의 발전을 간접적으로 示唆하는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관료들을 外的으로 규제하는 刑律의 제정이다. 古爾王 29년조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기사는 《新·舊唐書》의 百濟傳에도 보인다. “官人(또는 吏)으로 贓物을 받은 자와 도둑은 3배로 償하고, 종신토록 禁錮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古爾王代의 사실이건 泗泚시대 사실이건 어쨌든 국내의 史籍에 백제에서만 官人에 대한 刑律이 特記되고 있다. 그만큼 백제에서는 관료들의 역할과 권력의 비중이 컸음을 반증하는 현상일 것이다. 둘째로는 관료계층의 내면적 가치관과 규범의 발전이다. 구체적인 예로 죽음을 마다하지않는 忠諫의 신하들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고구려나 신라에도 忠諫의 신하들은 있었다. 고구려의 國相 倉助利는 토목공사를 일삼는 烽上王에게 諫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王을 廢했다(《삼국사기》 烽上王 9년). 신라에서도 眞

17) 《周書》 및 《北史》에 기록된 백제의 22部는 다음과 같다. ▲ 內官=前內部, 穀部, 肉部, 內掠部, 外掠部, 馬部, 刀部, 功德部, 藥部, 木部, 法部, 後官部 ▲ 外官=司軍部, 司徒部, 司空部, 司冠部, 點口部, 客部, 外舍部, 綱部, 日官部, 都市部. 《北史》에는 肉部가 보이지 않고, 《周書》의 ‘後官部’가 ‘後宮部’로 돼 있다.

한편 《北史》는 內·外官 21部를 적은 다음 “長吏三年一交代”라 했고, 《隋書》는 16官等を 적은 다음 “長吏三年一交代”라 했다.

盧重國은 王權이 강화된 泗泚시대 초기에는 22官府가 정치의 중심이었으나, 聖王의 管山城전투 패전이후 귀족중심의 6佐平制가 중심이 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것처럼 잘 조직되고 규모가 큰 관료조직이 그렇게 浮沈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pp.174~175, pp.188~191.

平王때 金后稷은 《老子》와 《書經》을 들어 사냥을 만류했다(《삼국사기》卷 45 列傳 5 金后稷條). 그러나 백제 후기에는 한 사람의 國相이나 近臣이 아니라 죽음을 무릅쓴 忠諫의 법도가 보편화했음을 짐작하게할만큼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城王은 臨流閣을 짓고 奇禽을 기르자 諫臣이 抗疏했고, 諫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봐 아예 宮門을 달아버리기까지 했다(《삼국사기》東城王 22년). 앞서 언급했던 佐平 成忠이나, 아마도 興首는 역사기록에 이름이 남은 한두사람의 예일 것이다. 백제사회에 독자적인 가치체제와 윤리규범을 갖는 官人=지식인 계층이 성장, 발전한 것으로 짐작된다.

未熟했던 신라

신라에서도 法興王 3년(516년) 兵部로부터 시작해서 眞德王 5년(651년)까지 總11건의 중앙官府 설치 기사가 《삼국사기》에 보인다.¹⁸⁾신라의 官府조직에서 특이한 현상은 중요 관직의 자리가 2명이 아니면 3명으로 돼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兵部·倉部·禮部·乘部·領客部등은 2명으로 돼있다. 이런 현상은 차관과 3등관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官制가 ‘王을 頂点으로 한 중앙 집권제가 아니라 귀족의 合議政體’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¹⁹⁾ 신라의 벼슬아치는 ‘王의 判料’라기보다는 6部출신 王京 귀족들의 신분제도에 제약된 집

18) 李基白, 1963, 〈稟主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1974, 一潮閣), pp.134~148.

李基白, 1964, 〈新羅執事부의 成立〉, 《新羅政治社會史研究》(1974), pp.149~153.

申滢植, 1974, 〈新羅兵部令考〉, 《歷史學報》61輯, pp.70~74.

19) 眞興王巡狩碑에 보이는 諸臣들은 同一官職에 대개 喙部(及梁部)와 沙喙部(沙梁部)출신, 그리고 예가 적지만 本彼部출신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귀족 合議政體란 喙部와 沙喙部 그리고 아마도 本彼部 출신을 합친 귀족들의 合議政體라는 뜻이 될 것이다.

李基白, 1963, 앞글, 《新羅政治社會史研究》(1974), p.139, pp.145~146.

井上秀雄, 1969, 〈三國史記에 나타난 新羅의 中央行政官制에 관하여〉, 《朝鮮學報》51輯, pp.48~51.

한편 申滢植은 신라官職의 귀족合議政體說에 대해 소극적 평가를 하고 있다.

申滢植, 1974, 앞글, pp.76~81.

단적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外形上 관료제도가 조직됐으나 지극히 미숙한 원초적 행정조직이었다.

고구려의 官僚制度

백제와 비교해 본다면 고구려의 관료조직은 분명치 않다.

우선 고구려에서는 官等과 官職의 分化가 분명치 않고, 관료조직의 내용이 국내 문헌이나 중국의 史籍에도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채 역사가 끝나고 말았다. 盧重國에 의하면 《삼국사기》와 중국문헌에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고구려의 중앙 관직은 다음 18개이다. ①大對盧 ②拔古難加(掌賓客) ③典客(拔古難加의 下位官?) ④舍人(宮中內事 管掌?) ⑤通事(?) ⑥國子博士 및 大學士(太學의 教授인 듯) ⑧長史·司馬·參軍 ⑩記室·星事·門下輩·召使(安岳3號墳 벽화銘文에 의함). 이어서 武官職으로 ⑮大模達(掌宮禁宿衛?) ⑯末客(大模達의 下位官?) ⑰將軍 및 大將軍.²⁰⁾ 이것을 다시 분석해보면 7개 官職을 제외해야 한다. 총 18개 관직중에서 ⑩항의 4개는 安岳3號墳의 墓主人 冬壽를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²¹⁾ ⑧항의 3개는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冊封체제에 따른 ‘幕府制’의 표현으로 외교 의례상의 직함으로 생각된다.²²⁾ 따라서 이들 7개를 제

-
- 19) 신라의 身分制 및 官制에 관해 필자가 참고한 연구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邊太燮, 1956, 〈新羅官等の 性格〉, 《歷史教育》1輯, pp.62~82; 金哲俊,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1975), pp.138~156; 李基白, 1961, 〈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1974), pp.66~88; 李基白, 1962, 〈上大等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89~132; 李基白, 1971, 〈新羅六頭品研究〉,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34~64; 李鍾恒, 1974, 〈新羅上古의 官位制의 性格에 대하여〉, 《國民大學論文集 人文科學》7輯, pp.29~42; 李基東, 1980, 〈新羅骨品制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韓國研究院), pp.35~53; 井上秀雄, 1969, 앞글, pp.19~72.
- 20) 盧重國, 1979, 앞글, pp.140~145.
- 21) 金元龍, 1980, 《韓國壁画古墳》(一志社), pp.41~44.
盧重國, 1979, 앞글, p.111 註 47, p.155 註 149.
- 22) 金翰奎, 1985, 〈南北朝時代의 中國의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一潮閣), pp.140~150, pp.174~176 참조.

외하면 11개가 남는 셈이다. 물론 백제의 佐平이나, 官制 발달 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신라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구려의 중앙 官職이 이것만이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王命宣納이나 재정·군사등을 맡은 官職이 고구려에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또 《삼국사기》와 《三國志》에는 ‘主簿’ (《新唐書》·《通典》·《高麗記》에서는 ‘鬱折’)가 보인다. 그 지위가 大加와 맞먹는 王의 직속관료로 생각된다.²³⁾ 官府로서는 中裏府나 宮禁宿衛를 맡은 軍營을 상상할 수 있으나 확실치 않다.²⁴⁾ 이상 모든 자료를 종합한다 해도 고구려의 중앙 관료조직에 관한 기록이 이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역시 고구려의 중앙 관료조직의 정치·사회적 비중이 그만큼 적었음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백제·고구려의 관료제 발전에 관한 이러한 차이가 어떤 사회사 내지 정치사의 구조적 차이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零星한 史料에서나마 이러한 의문을 풀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찾는다면, 거꾸로 백제·고구려의 관료제 발전의 實狀을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백제·신라에서 벌어진 權力鬭爭

삼국시대 정치·사회사적 발전과정을 구조적으로 밝힐만한 문헌자료를 찾기란 지극히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 문헌사학의 입장에서 신라에서 善德王 16년(647년)에 일어난 毗曇의 亂이 주목돼 왔다. 上大等이라는 전통귀족 毗曇이 王權에 挑戰한 것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은 결국 毗曇의 敗死로 끝났다고 《삼국사기》는 전하고 있다. 이로써 신라에서는 專制王權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신라의 毗曇의 亂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전통귀족과 王權의 권력투쟁은 백제에서도 있었다. 毗曇의 亂보다 꼭 1백70년 전인 476년에 文周王이 解仇에 의해 弑害된 사건이 그것이다. 그로부터 24년 뒤

23) 武田幸男, 1978, 〈高句麗官位制와 그 展開〉, 《朝鮮學報》86輯, pp.18~19.

盧重國, 1979, 〈高句麗國相考(上)〉, 《韓國學報》16輯, pp.17~18.

24) 盧重國, 1979,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pp.139~140, p.145.

에는 東城王이 昔加에 의해 弑害됐다. 신라의 毗曇이 전통귀족 출신 上大等이었던 것처럼, 文周王을 弑害한 解仇는 漢城時代의 전통적 귀족출신이었다. 또 東城王을 弑害한 昔加는 錦江유역, 아마도 熊津의 토착세력으로 짐작된다. 170년 뒤 신라에서 毗曇의 亂 이후 專制王權이 확립된 것처럼, 백제에서는 文周·東城王의 遇害라는 정치적 激動이후 武寧王代부터 專制王權이 확립되고, 본격적인 관료제 지배체제를 정비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⁵⁾ 專制王權의 확립이라는 결과를 두고 볼 때 文周·東城王의 遇害라는 사건은 전통귀족을 밀어내려는 王權側의 정치적 試圖로 誘發된 권력투쟁의 결과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漢城을 고구려군에게 내주고 熊津으로 내려온 백제왕권은 南遷을 일거에 전통귀족을 밀어내고 專制王權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 아마도 南遷초에 벌써 解氏세력은 錦江유역의 새로운 세력과 손잡으려는 文周王의 試圖에 반격해야될 입장에 몰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文周王에 이은 東城王代는 전에 없이 王權이 강화된 시기로 생각되고 있다. 이어서 昔加에 의해 東城王이 弑害당한 사건은 王權側의 熊津토착세력 牽制策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고 있다.²⁶⁾

신라 善德王代 毗曇의 亂도 전통귀족인 眞骨귀족과 伽倻系의 소위 新金氏인 金庾信이 이끄는 親王軍의 싸움이었다. 이 亂中에 善德王은 반란군의 칼에 죽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²⁷⁾

-
- 25) 李基白, 1978,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 《百濟研究》9輯, pp.17~19.
 李鍾旭, 1978,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45號, pp.44~51.
- 26)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11輯, pp.36~41.
 李基白, 1978, 앞글, pp.9~20.
 李鍾旭, 1978, 앞글, pp.43~44.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4, pp.70~76.
- 27) 《삼국사기》에는 善德王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투경과를 분석해 보면 善德王은 亂中에 죽었고, 死因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 백제의 文周王이나 東城王처럼 비정상적인 죽음을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鄭璟喜, 1988, 〈三國時代 社會와 儒敎經典의 研究〉,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379~380.

결국 熊津遷都후의 백제나, 170년뒤 신라에서 일어난 권력투쟁은 전통귀족의 제약을 뿌리치려는 王權쪽의 試圖로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형태의 권력투쟁은 세계적으로 고대왕국의 專制化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前近代期の 관료조직 또는 행정조직이 專制王權의 발전과 비례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와 아이젠슈타트(Eisenstadt)의 분석적 圖式이 주목된다. 專制王權의 발전이란 정치권력이 전통적 집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통적 귀족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를 말한다. 아이젠슈타트는 그 조건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前近代期 중앙집권적 官僚制王國에서 통치자들은 통치수단인 관료조직을 전통적 귀족이나 집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한 어느 정도의 自律性을 부여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관료들의 활동범위가 커지고 경험과 전문적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가 커감에 따라 더욱 촉진된다. 또한 통치자들은 전통적인 귀족집단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집단이나 계층속에서 새로운 동맹자를 찾게 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아직도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行政機構에 관해서는 새로운 2차적 正當性의 패턴이 발전하게 된다. 행정기관의 판단기준은 전통성보다는 合法性이고, 效率성과 일정한 물에의 집착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아직도 상당히 제한된 것이나, 이와 함께 官人의 직업적 내지 半職業의 이데올로기가 발전하게 돼 官人은 王의 개인적 下人이 아니라 정치공동체 전체의 公的인 官吏라는 생각이 강조된다. 이러한 사회에서 비로소 祭·政이 분리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각 분야에서 사회적 分化가 일어난다. 특히 경제·종교·문화 분야에서 分化가 두드러져 교환경제가 발전하고, 가족이나 지역집단같은 귀속적 집단을 떠나 공식화된 교육기관이 발전하게 된다. 신분체제도 보다 융통성을 띠게 돼 血族같은 귀속적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업적의 기준의 비중이 커가고, 富·권력·威信이라는 기준 사이에 分化가 일어난다. 특히 종교·문화 분야에 새로운 엘리트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外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중앙집권적 官僚制 王國은 지속될 수 없고, 家父長的 王國, 2元的 征服王國 또는 봉건국가로 후퇴하고 만다. 아이젠슈타트는 중앙집권

적 官僚制王國으로 9개 유형을 들고 이 중에서 두번째에 漢에서 清代까지의 중국을 꼽고 있다.²⁸⁾

여기에서 우리는 전통귀족의 제약을 뿌리치려는 권력투쟁 끝에 잘 짜여지고 규모가 큰 관료제도가 백제에 등장했다는 사실의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신라에서도 毗曇의 亂 이후 전통귀족들의 和白會議가 격하되고, '執事部'라는 專制王權의 최고官府가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眞德王 5년).²⁹⁾

필자가 막스 베버, 특히 아이젠슈타트의 분석적 圖式을 꽤 장황하게 인용한 것은 이러한 정치·사회사적 의미를 갖는 南遷初 백제의 정치적 격동이 지금까지 잘못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백제王權은 그 기반이 미약했고, 文周·東城王之 遇害도 그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일로 인식돼 왔다. 더구나 文周·東城王之 죽음은 漢城이 고구려군에게 함락돼 백제王權이 위기에 몰렸음을 나타낸다는 것이 通說로 돼있다. 그러나 外敵에게 漢城을 빼앗겼다는 것이 바로 對內的 위기로 이어졌다는 說은 구체적 자료가 없는 限 근거없는 假說일 뿐이다. 이 假說과는 반대로 백제王權은 전통귀족의 제약을 타파하고 專制權의 확립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 결과가 우리 역사상 초유의 본격적인 관료제로 나타났다는 것은 아이젠슈타트의 분석적 圖式과도 일치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비교해 본다면 백제에서 벌어진 사태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28) Weber, Max,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Translated by A.M.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from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47), Free Press(Macmillan Co., New York, 1964), pp.346~350.

Eisenstadt, S.N., The Political System of Empires, Free Press of Glencoe (Macmillan Co., New York, 1963), pp.3~4, pp.10~22, pp.26~27, pp.45~49, p.61, pp.65~67, pp.82~84.

Eisenstadt, S.N., Political Orientations of Bureaucracies in Centralized Empires, Essays on Comparative Institutions(John Wiley and Sons, New York, 1965), pp.210~242.

29) 李基白, 1964, 앞글, pp.100~101, pp.151~153

고구려에서의 權力鬭爭

백제에서 文周·東城王이 弑害되는 격동기가 지난 무렵 고구려에서도 王權과 전통귀족의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구려에서는 王權이 專制權을 잃고, 새로운 지배체제가 형성돼가고 있었다.

문헌기록으로 《周書》·《北史》 그리고 《新·舊唐書》의 高句麗傳에 보이는 大對盧에 관한 기사가 주목돼 왔다. 3년 임기의 최고官職인 大對盧(《新·舊唐書》)는 서로 武力으로 싸워 이긴 者가 차지했고, 王은 오직 ‘閉宮自守’할뿐이었다는 것이다. 《周書》나 《北史》의 기사가 6세기때의 일이라면 고구려의 정치적 격동과 연관된 일이었을 것이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安藏王이 弑害당했고(530년), 뒤이어 즉위한 安原王이 돌아갔을 때(545년) 外戚세력인 鹿群과 細群사이의 충돌로 2천여명이 죽었다. 고구려의 惠亮法師가 신라의 居柴夫에게 “지금 우리나라는 政亂하여 멸망할날이 머지않다”고 말한 것(《삼국사기》居柴夫傳)은 陽原王 7년(551년)이었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할 때 이 무렵 고구려는 私兵을 거느린 지배층 각 집단 사이에 무력대결로 집권세력이 결정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고구려의 정치적 격동은 淵蓋蘇文이 王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세력을 武力으로 소탕하고 專權을 휘두르게 된 것(《삼국사기》列傳)으로도 그 결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大臣 百餘人을 죽이고 榮留王을 弑害한 뒤 寶藏王을 세우고 스스로 莫離支가 됐다(642년). 이로써 고구려의 권력투쟁은 백제와는 달리 王權의 敗北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6세기 前半, 아마도 安藏王代부터 고구려의 王은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 轉落해가는 과정을 더듬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王權을 정치적 상징으로 밀

30) 李弘植,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研究》(1973, 新丘文化社), pp.155~162.

李弘植, 1956,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斗溪 李丙燾博士 華甲紀念論叢》(一潮閣), pp.88~90.

盧泰敦, 1976, 〈高句麗의 漢水流域喪失의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13號, pp.31~34.

李乃沃, 1983,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 《歷史學報》99,100合輯, pp.72~73.

어낸 貴族群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는 앞으로 究明해야될 과제다. 이와 관련해서 淵蓋蘇文의 동생인 淵淨土가 고구려 멸망 2년전에 “12城 763戶 3,543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來投”했다는 《삼국사기》(文武王 6년條)의 기사가 주목된다. 그것이 고구려 귀족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淵蓋蘇文이 집권과정에서 동원했던 ‘部兵’도 그러한 독자적 지배영역을 바탕으로한 것이었음을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끝내 관료제도에 관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國亡에 이른 것은 史料의 逸失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관료제 王國과는 판이한 어떤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推論이 가능하다. 아마도 고구려는 중앙집권적 王國의 체제를 실현하지 못했거나, 실현했다 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고구려의 이러한 상황이 刑律에 나타난 특징, 다시 말해서 원시적 報復主義의 색채가 짙은 酷刑主義와 사회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능한 하나의 설명은 고구려가 領域에서는 큰 규모의 王國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으로는 보다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들의 집단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併列的으로 溫存된 바탕위에서 王國이 편성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이란 왕국 형성기에 ‘那’ 또는 ‘部’로 표현된 집단이거나, 또는 王國안에 정복·編制된 소규모의 ‘國’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구규모는 크면서도 작은 집단들이 해체되지 않은채 併列的으로 編制된 뒤르켐의 이른바 ‘分節構造의 사회’가 참고될 만하다.³¹⁾

31) 뒤르켐은 總人口는 많지만 사회적 밀도가 낮은 사회를 ‘分節구조(Segmental Structure)’의 사회, 또는 分節型사회라고 부르고 있다. 그것은 각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개의 마디로 구성돼 있어, 보다 큰 유기적 조직이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를 가리킨다.

Durkheim, Emile, 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Translated by George Simpson, 1961, The Free Press, New York), pp.74~75, p.222, pp.260~262, pp.287~290.

鄭璟喜, 1988, 〈三國時代 文化의 社會的背景〉,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pp. 177~178.

IV. ‘王者天孫說’을 脫皮한 社會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社會構造論의 비교·분석에는 자료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難點때문에 분명한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문화형스태의 비교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비교적 많다. 다시 말해서 社會構造論의 비교·분석을 문화형스태의 비교·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특히 王權의 正當化와 관련된 문화체계를 주목해야 될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시대의 왕국들은 모두 ‘東明型說話’³²⁾에 의해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天孫에 의해 王業이 이루어졌다는 ‘王者天孫說’이다. 그러나 고구려에 朱蒙, 신라에 朴赫居世 및 金闕智의 神異스런 탄생說話가 있었던 것과 달리, 백제에서는 새로운 始祖說話 없이 北夫餘 始祖 東明王을 始祖로 모셨다. 《北史》와 《隋書》에는 ‘東明의 後孫 仇台’를 백제의 始祖라 했다. 仇台가 북부여에 實在했던 임금임은 필자가 지적한 바 있다.³³⁾ 다시 말해서 고구려·신라에서는 정치권력이 神의 얼굴을 하고, 왕권의 정당성이 神話의 으로 설명된 데 대해, 백제에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역사적으로 설명됐음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말에 접근하면서 백제에서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윤리적’으로 설명됐다. 정치권력의 윤리적 정당화는 백제의 경우 불교와 유교, 특히 유교적 天命說과 유교적 규범이 강조된 데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仙道나 불교도 고구려·신라에서는 王者天孫說의 變形으로 나타났다는 데서 백제와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다.

始祖 昇仙說과 王即佛불교

仙道の 경우 고구려·신라 모두 始祖가 神仙이 돼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始祖昇

32) ‘東明型說話’란 北夫餘始祖 東明王의 誕生說話를 말한다. 고구려의 朱蒙, 신라의 朴赫居世와 金闕智의 誕生說話가 모두 같은 類型에 속한다.

鄭璟喜, 1983, <東明型說話와 古代社會>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120~155.

33) 鄭璟喜, 1983, 앞글, pp.125~127.

仙說'을 갖고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廣開土王陵碑에 東明王이 昇仙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高麗때 李奎報가 《舊三國史》를 바탕으로 해서 지은 東明王篇에도 東明王이 '尸解仙'이 돼서 昇仙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한편 신라에서는 朴赫居世가 '形解'해서 昇仙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삼국유사》(卷1 紀異1 新羅始祖 赫居世王條)에 전해지고 있다. 赫居世의 遺體가 흩어져 떨어지니 五體를 따로 모셨다는 얘기가.³⁴⁾

그러나 백제에서는 이러한 始祖昇仙說을 남기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백제 땅이 바로 '仙鄉'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역시 《삼국유사》에 의하면 扶餘에 三神山이 있어, 그 위에 神仙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다(南扶餘條). 또 武王은 宮의 남쪽에 못을 파고, 못속에 '方丈仙山'을 상징하는 섬을 만들었다고 했다(《삼국사기》).

불교의 경우에도 고구려·신라에서는 임금의 부처로 행세하는 '王即佛불교'의 형태를 취했다. 신라 王室의 聖骨說은 眞平王에서 善德·眞德의 두 여왕에 이르기까지 석가모니佛의 직계 小家族임을 주장하는 王權의 불교적聖化의 所産이었다. 그러나 백제에서는 武王이 '佛性을 지닌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彌勒寺緣起說話의 예로 볼 때 王即佛불교와는 거리가 먼 성숙한 信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佛性을 지닌 가난한 소년'은 《涅槃經》에 보이는 부처의 비유에서 나온 說話이다.³⁵⁾ 적어도 문헌학의 입장에서 백제가 정치권력의 신화적 정당화 단계를 벗어난 사회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反證하는 또 다른 예로 백제가 유교적 天命說과 유교적 규범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백제의 유교적 天命說은 《삼국사기》나 중국의 史籍에서 백제에 관해서만 전해주고 있는 '祭天祀地'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중국에서 天子의 祭天儀式은 祈福을 위

34) 鄭璟喜, 1989, <三國時代 社會와 仙道>,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248~249, pp.240~241, pp.206~208.

35) 鄭璟喜, 1989, <三國時代 社會와 佛敎>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286~287, pp.282~286 pp.287~291.

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天에의 報功으로서 禮敎主義에 입각한 儀禮였다.³⁶⁾ 따라서 백제에서 天子의 祭天儀式을 행했다는 것은 유교적인 天命說에 의해 왕권의 정당성을 설명했음을 뜻한다. 天命說은 天孫이기 때문에 王者가 되는 것이 아니라, 天命을 받았기 때문에 王者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天命은 자기가 하기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고 끝나기도 하는 것이다. 天命說의 天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점에서 王者天孫說의 단순한 초인간적 힘을 가진 天神과 다르다. 天命說과 表裏의 관계에 있는 것이 忠이나 孝와 같은 유교적 규범이다. 백제에서 法王의 諱가 '孝順' 이었고, 그의 손자인 義慈王이 '海東曾子'로 이름났고, 그의 太子도 이름이 '孝'라 했다. 孝란 단순한 가족적 규범이 아니라, 유교적 도의정치이념의 기반인 만큼 백제에서 유난히 孝가 강조됐다는 것은 왕권의 정당성이 유교적 규범에 의해 설명됐음을 뜻한다. 삼국시대말 신라에서도 強首가 읽은 典籍의 첫머리에는 《孝經》이 꼽혔다(《삼국사기》).³⁷⁾

결국 백제는 우리 역사상 王者天孫說의 전통을 탈피한 최초의 사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력의 神性탈피라는 '知的인 前進'이 삼국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민족문화사상 特記할만한 일이었다. 백제의 사회와 그 문화의 先進性은 여기에서 또 한차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끝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백제사회의 규모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백제는 3국중 가장 작은 나라였다는 것이 通念으로 돼 있다. 그러나 刑律로 보나, 3국중 가장 발달된 중앙집권적 관료제 왕국이었고, 王者天孫說의 전통에서

36) 西田太一郎, 1935, <郊祭의 對象과 그 時期에 關하여>, 《支那學》8卷1號(京都, 支那學社編), pp.47~65.

狩野直喜, 1953, 《中國哲學史》(東京, 岩波書店), pp.49~60.

藤川正數, 1985, 《漢代에 있어서의 禮學의 研究》增訂版(東京, 風間書房), pp.213~236.

池田末利, <中國에 있어서의 至上神儀禮의 成立>, 《中國古代宗教史研究》(1981, 東京, 東海大出版會), pp.460~473.

池田末利, <文獻所見의 祀天儀禮序說> (上·下), 《中國古代宗教史研究》 pp.494~536.

37) 鄭璟喜, 1988, <三國時代 社會와 儒敎>,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364~366, pp.401~407, pp.408~415.

탈피한 知的인 前進이 과연 것처럼 矮小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은 당연히 提起됨직하다. 먼저 지적해 뒤야할 것은 백제나 고구려가 망했을 때 중국의 문헌에 기록된 戶口數다. 《新·舊唐書》 모두 백제는 76만戶, 고구려는 69만戶(《舊唐書》에는 69만7천戶)로 돼 있다. 그 數值 자체에 疑問이 있다 하더라도 백제의 人口규모가 고구려보다 最少 10%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실은 留意해야 될 것이다. 또 백제에 ‘點口部’라는 人口管理를 맡은 官府가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그만큼 근거가 있는 數值였을 것이다. 이러한 人口규모의 차이는 농업생산규모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示唆하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신라의 戶口數에 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나, 《三國志》韓傳의 시대에 馬韓이 ‘凡五十餘國에 總十餘萬戶’인데 비해 弁·辰韓은 ‘合二十四國에 總四~五萬戶’였다는 기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정도의 比率을 3국시대말 백제와 신라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신라의 인구 규모는 백제의 약 절반이라고 推定할 수 있을 것이다. 義慈王의 공세에 직면한 신라의 眞德여왕이 신라를 스스로 ‘小’라 하고, 백제를 가리켜 ‘大’라³⁸⁾ 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한다면 백제와 신라의 전통적인 경계선은 낙동강이었고 신라는 眞興王의 군사적인 성공으로 48년동안 낙동강을 건너 최대의 판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백제 武王의 失地회복작전으로 다시 밀리기 시작해서 義慈王代에는 백제가 낙동강線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다.³⁹⁾ 이러한 사실은 백제 사상 최소의 판도였을 때에도 인구 규모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인 농업생산의 규모는 신라보다 越等 컸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인구 규모에 관한 과학적 인식은 앞서 인용한 뒤르켐이 사회적·문화적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규모와 밀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8) 《三國史記》卷41 列傳 第1 金庚信(上).

39) 李丙燾·千寬宇·全榮來의 연구를 종합한 백제의 版圖변화에 관해서는 鄭璟喜 1988, <三國時代 文化的 社會的 背景>,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1990), pp.182~183, pp.185~186, pp.193~196.

V. 맺는 말

지금까지 필자는 중국의 문헌에 남아 있는 백제와 고구려의 刑律의 엄청난 차이에 주목하면서 通說과는 다른 몇가지 결론을 얻게 됐다. 첫째는 고구려의 사회와 문화는 백제와 비교할 때 결코 ‘先進’이었다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刑律에 나타난 원시적 報復主義는 백제의 寬刑主義와 비교할 때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둘째 백제가 규모가 크고 精緻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발전시킨 것과 비교할 때 고구려 사회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와는 다른 상황에 있었고, 아마도 보다 전통적인 소규모 집단들의 권력기반이 溫存된 것 같다는 것이다. 셋째 삼국중 백제는 王者天孫說의 전통을 탈피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회였다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 서술, 그 중에서도 삼국시대사는 고도로 이데올로기화 돼 왔다. 전통적으로 삼국시대사가 王朝史서술의 입장에서 신라중심으로 구성돼 온데다, 근래에는 북한에서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필요에 따라 고구려 중심의 삼국시대사가 구성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또 다른 이데올로기화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최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 결과를 짚막한 글로 내놓으면서 비판을 기대하고자 한다.